

제과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

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!

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.

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해야 한다.

신고기간 이후에 신고·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

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·납부하는 방법과

절세 비법을 배워본다. 정리_정승이 기자 · 사진_주현진



■ 부가가치세란?

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)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. 물품 판매 가격에 10%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사업자가 납부하더라도 실제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. 휴업 등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.

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

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(직전년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)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.

① 일반과세자

(매출세액(공급가 × 10%) – 매입세액(매입가 × 10%)

② 간이과세자

(매출액 × 40% × 10%) – 매입세액 × 40%

*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 적용, 제과업의 경우는 40%

단, 간이과세자의 6개월 간 매출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경우

부가가치세 납부 면제

■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주기로 1년에 두 번씩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·납부해야 한다(www.hometax.or.kr에서 전자신고도 가능).

〈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서류〉

- 매출·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- 부동산임대공급가액영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

단, 영세사업자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

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-확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-확정신고의 절차를 따른다.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/2을 세무서에서 결정해 납부하게 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번거로움을 줄였다. 단, 예정고지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예정고지제도가 생략돼 확정신고·납부만 하면 된다.

1월부터 6월까지에 해당하는 상반기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다.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 세액의 10%가 부과되고, 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. 아래와 같이 특정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잊지 말고 행거뒤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.

■ 부가가치세와 세액 공제(제과업 기준)

1 면세가 되는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은 경우

2 간이과세 제과업자가 농어민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경우

3 연매출 4천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

–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1.5%



Advice 정동현

〈정동현세무사사무소〉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. 현재 부동산증개업협회지 〈전국부동산뉴스〉와 치과정보지 〈덴포라인〉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.